

 금융위원회	<b>보도자료</b>			 금융감독원
	<b>보도</b>	2019.2.22.(금) 조간	배포	
<b>책임자</b>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창국(02-2100-2650)	<b>담당자</b>	허성 사무관 (02-2100-2655)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동회(02-3145-7580)		이동춘 팀장 (02-3145-7600)	

##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설명회」 개최

### 1 개요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를 이행하기로 합의

\* ①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②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③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④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

□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17.3.1.)

○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0.9.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참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① (대상상품)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됨

② (대상회사) 금융회사는 3월, 4월, 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20.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함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합산하여 산출

※ '18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0.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54개사이며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IOSCO 표준 모형 사용 시)으로 추정됨

-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19.2.26)할 계획
  -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 개시 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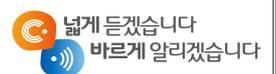
- ◆ 일시 : 2019.2.26.(화) 16:00~18:00
- ◆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강당
- ◆ 주요내용
  -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결과(금융연구원)
  - IOSCO, 표준모형과 ISDA SIMM모형 비교(노무라금융투자)
  - 개시증거금 계약 전반(ISDA) 및 실무(Citi은행)
  - 개시증거금 수탁인 준비현황(예탁원)
  - 변동 및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 및 향후계획(금감원)

- 한편, 동 제도 관련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도래(19.2.28.)하여 이를 1년 6개월 연장(20.8월말)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20.9.1.)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 붙임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 ☞ 거래상대방의 신용·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고 CCP청산을 유도
- (대상 기관)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 \* 매년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잔액 평균(매년 9월부터 1년간 적용)
-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스왑 등은 제외
- (시행 시기) 변동증거금은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은 '20.9.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증거금 제도(요약)

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일일 익스포저 관리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미래의 잠재된 위험에 대비
	참	참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or 내부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상계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억
담보관리	개별관리	제3의 보관기관
담보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적용시기	'17.3월	'20.9월

**붙임2**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회사(54개사, 18년 기준 추정)**

비청산 잔액규모	금융그룹 소속		개별회사	
0~10 조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DB손해, KB손해, 농협손해, 삼성화재, 한화손해	11		
10~50 조원	농협은행, KB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교보생명, 농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10	SMBC은행, UOB대화은행, 맥쿼리은행,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6
50~100 조원	NH투자증권	1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수출입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4
100~150 조원	국민은행	1	HSBC은행, DBS은행, ING은행, 미즈호은행, 크레이트스위스은행, IBK기업은행, 노무라금융투자	7
150~200 조원	신한은행	1	우리은행, 도이치은행, 모간스탠리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4
200~600 조원	KEB하나은행	1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BNP파리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한국산업은행	8
<b>합계</b>		<b>25</b>		<b>29</b>

**<참고>**

- 2020.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임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잔액)은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되며 당해년 9월부터 익년 8월까지(1년간) 적용됨(매년 갱신)
- 개별 금융회사의 잔액이 10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융그룹에 속하여 금융그룹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임

과제 내용	이행결과	이행계획
<p><b>1. 거래정보저장소(TR)</b></p> <p>* 장외파생거래의 모든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 감독기관은 이를 모니터링</p>	<p><b>도입 완료</b></p> <p>*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TR(거래소 내정)을 도입하기 위해 금투업 규정 개정 완료 (18년)</p>	<p><b>시스템 구축 추진 중</b></p> <p>* 거래소-TR 시스템 구축 후 시행 예정(20년 목표)</p>
<p><b>2. 중앙청산소(CCP)</b></p> <p>*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CCP를 통해 장외파생거래를 결제</p>	<p><b>도입 완료</b></p> <p>* 한국거래소가 CCP로 원화 IRS에 대해 의무청산 시행 중 (14.6~)</p>	<p><b>PFMI 점검 및 검토</b></p> <p>* 국제기준에 맞는 CCP요건 충족여부를 점검</p>
<p><b>3. 증거금 규제</b></p> <p>*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교환</p>	<p><b>도입 완료</b></p> <p>* '증거금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17.3.1. 시행)</p>	<p><b>개시증거금 도입 준비</b></p> <p>* 국내사(10조이상)는 '20.9.1. 개시증거금 적용 예상되어 시스템 구축 및 계약서 작성 등 충분한 사전준비 유도</p>
<p><b>4. 자본 규제</b></p> <p>* 비결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CCP에서 청산되는 장외파생거래의 위험가중치는 2% 적용(비청산 20~150%)</p>	<p><b>도입 완료</b></p> <p>*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4.6) 등 관련규정 마련</p>	-
<p><b>5. 전자거래플랫폼(ETP)</b></p> <p>* 경쟁입찰을 통해 장외파생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전자거래플랫폼으로 주식HIS와 유사</p>	<p><b>1단계</b></p> <p>* 연구용역 결과, 도입유보</p>	<p><b>도입 유보</b></p> <p>* KRW IRS의 거래규모 성숙 시 도입여부 재검토</p>

\* 변동증거금에 6개월 준비기간을 부여한 홍콩 등이 도입완료로 되어있어 우리나라도 도입완료로 변경해줄 것을 FSB에 요청(17.5말)

※ 이행단계별 평가기준

미이행	이행단계 해당 없음
1	법적 체계나 다른 규제가 시행중이거나 공개초안 또는 제안서 발표
2	일부 거래에 대해 기준과 요건이 공개초안이나 제안서로 발표
3	일부 거래에 대한 기준과 요건이 채택
도입완료	90% 이상의 거래에 대한 기준과 요건이 시행